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단
법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전국 병원장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제 목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

1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1869(2024.4.19.)
2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(경계 → 관심, 5.1.)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불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 변경사항

- 추진 방향 :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,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

- 부과금액 : 5만원(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시 1명분 당 1회 지불)

* 단, 의료급여 수급권자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무상지원 유지

- 추진 체계

① 치료제를 조제, 투약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(치료제 담당기관)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징수

②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(상계)

③ 질병청에 반환

- 시행 : 2024.5.1. ~

나. 기타

-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관련 안내 및 문의 : 시군구 보건소

불임 1.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부

2. (참고)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

※ 불임자료 다운로드 :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팀장 이다미 제2국장 정교숙 제1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24-143 (2024.04.23)

우편번호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4층 대한병원협회

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4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59) E-mail : ldm@kha.or.kr